

## 제21장 최종규정

### 제21.1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### 제21.2조 발효

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### 제21.3조 종료

1.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.
2.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전달일부터 30일 이내에,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1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.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전달일부터 18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협정은 종료된다.

### 제21.4조 개정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.
2.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이 협정에 통합되거나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.

제21.5조  
가입

이 협정은 양 당사국 간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그 밖의 국가나 개별 관세 영역이 가입하거나 연합할 수 있다.

제21.6조  
정본

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일          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

---

---